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모듈 2021 Edition

# Customs Valuation Archer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

머리말

#### "Customs Valuation Archer"

#### 제3개정판(2021년)을 발간하며...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를 제 작하고 이 학습노트를 발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듈과 책자 는 그 동안 관세평가 입문교재로서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업무를 다루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자학습 컨텐츠는 개정이 없었지만, 이 책자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판이 발간되어 왔습니다. 올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큰 폭의 개정을 계기로 2021년 제3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①올해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협정 번역문을 수정 하였으며, ②연속판매에서 최종 판매 원칙 등 '수출하기 위한 판매(sale for export)'와 ③가격할인, 가격조정약관 및 가격의 변경 등 '실제지급가격'에 대해 심도깊은 내용을 보충하였고, ④주요 용어 및 문구의 통일과 더불어 주요 사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자 개정 내용은 향후 전자학습(e-learning) 컨텐츠에도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Customs Valuation Archer"가 빠른 시간 내에 관세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써 관세평가 업무를 배우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8. 관세평가분류원장

#### 강의노트 활용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의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관세평가 전자학습의 내용은 반복, 심화학습이 필요한 특성에 따라 개별 학습자만의 예습, 복습, 필기를 위한 노트를 필요로 합니다.

전자학습 콘텐츠의 내용은 강의노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각색, 제작되어 있습니다. 각 차시별 학습 진행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法源)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의 핵심 및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자신만의 업무용 레퍼런스 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평가 실력의 향상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평가 〉관세평가 전자도서관 〉 전자 학습 콘텐츠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 과정과 교재는 관세평가의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습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실제 무역거래에 대한 평가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해 판단됩니다.

"

# CONTENTS

	* 머리말: "Customs Valuation Archer" * 강의노트 활용	iv
131	<b>관세평가 소개</b> 1. 관세평가란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1
2차시	관세평가의 법원과 기본원칙 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0 14
3.5.1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I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1.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2. 수출판매(Sale for Export)	19 22
4차시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II.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2. 간접지급	35 57

F 5	사/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Ⅲ.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3.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	66
	4. 공제요소	75
6え	시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Ⅳ. 거래가격 배제사유 1	
	1. 거래가격의 배제	83
	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Restrictions)	88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Condition or Consideration)	93
7え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V. 거래가격 배제사유 2	
	4.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Proceeds)	103
	5. 특수관계의 영향	107
8호	시 거래가격방법 사례연구	125
9え	가격에 대한 조정 I. 기산요소의 의의	
	1. 가산요소	137
	2. 가산조정의 범위	139

10克	以 パ 가격에 대한 조정	
	II. 가산요소 1	
	1.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2.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143 153
1ןֹב	<b>)</b> 가격에 대한 조정    . 가산요소 2	
	3. 생산지원(Assists)	156
12호	가격에 대한 조정 IV. 기산요소 3 4.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170
135	<b>) 가격에 대한 조정</b> V. 가산요소 4	
	5. 사후귀속이익(Proceeds) 6.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Transport costs and Associated charges)	191 196
145	시 가격에 대한 조정 사례연구	213

	(	
15秋/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시물품의 거래가격방법(제2·	3방법)
	1.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224
16末人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I. 국내판매가격 또는 공제가격방법(제4방법)	
	1. 국내판매 또는 공제가격 방법(Deductive Method) 2. 공제금액 3. 초공제방법(Super Deductive Method)	233 239 246
17ネル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II. 산정가격방법(제5방법)	
	1.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249
الملة81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Ⅳ. 합리적 방법(제6방법)	
	1.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256
19末人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사례연구	269



# 관세평가 소개

### 1. 관세평가란

# 1) 평가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 값을 헤아려 매김' 또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이다.

"이 승용차는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이 시계는 천만 원짜리다." 라고 할 때 '승용차'의 가치는 '아파트 한 채'라는 다른 물건의 가치 로, '시계'는 '천만 원'이라는 화폐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다.

#### 2)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같은 물품이라도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때의 가격은 2억5천만원이지만, 세무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은 2억원일 수 있다. 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감정가는 2억원이아니라 1억5천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부과를 위한 평가이다. 관세평가는 세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평가와 구별된다. 상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기대치에 따라 물품이 평가되지만, 관세평가는 세관이 여러 거래에 개입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원칙이 필요하다.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수입물품(imported goods)에 종가관세
   (ad valorem duties)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value)을 말한다.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 1.(a)
- <sup>™</sup>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sup>™</sup>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 ★ 관세 과세가격, 거래가격 등의 가격은 "value"이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등에서는 "price"이다. 엄밀하게 말해 "value'와 "price"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관세 법령에서는 이를 모두 "가격"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도 모두 "가격"으로 표기한다. 다만, 문맥 상 이를 명확히 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value"와 "price"를 함께 적는다.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 관세평가의 대상 : 수입물품

• 관세평가의 범위 : 과세가격

####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 1) 관세평가 국제표준의 필요성

흔히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 한다. 이유는 세율과 더불어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오늘날 세계는 WTO의 출범, FTA 증가 등으로 자국의 관세율을 운영하는데 다자간 국제기구, 양자 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관세율 그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하향 평준화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과세가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제도는 전통적으로 무역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국내산업보호이다. 전통적인

방법이 관세율을 이용하여 관세장벽을 치는 것인데, 최근 관세율을 이용한 국내산업보호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여기서 관세평가제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등장한다. 가격의 개념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등 관세평가의 기술적인측면을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높여 관세율 인상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앞서 말한 과세가격의 성격과 관세평가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관세평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교역상대국들의 무역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최초의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바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이다.



"실제가격(Actual Value) "은 수입국의 법률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물품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된 때의 가격이어야 한다. <sup>55</sup>★

GATT 제7조(관세 목적의 평가)

★ "2. (b) "Actual value" should be the price at which, at a time and plac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such or like merchandise is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under fully competitive conditions,"

#### 2) 관세평가 국제표준의 역사

#### ▶ GATT 제7조

1920년대 말 시작된 관세평가의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논의는 1945년 UN 창설로 본격화되어,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GATT 제7조를 통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즉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GATT 제7조는 직접 집행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 브뤼셀 평가협약(BDV)

이후 집행력을 가진 통일된 관세평가 규범의 제정이 더디자 유럽관세동맹에서는 「브뤼셀평가협약」(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1953년 7월 28일 발효 이후 1981년 GATT관세평가협정이 등장하기 까지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규범이었다.

브뤼셀평가협약이 규정하는 관세평가 즉,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 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가격(Normal price)이어야 한다고 하고, 정상가격이란 상호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의 판매에서 관세가 지급되어야 하는 때에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

<sup>★ &</sup>quot;... the price which they would fetch at the time when the duty becomes payable on a sale in the open market between buyer and seller independent of each other."

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세관 직원은 송품장 가격이 동종 물품에 대한 독립 당사자 간의 공개 시장에서 수입 당시에 판매되었을 가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 송품장 가격을 부인하고 관념적 개념(notional concept)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념적 개념의 가격은 소위 "CIF주의"와 함께 BDV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우리나라는 브뤼셀평가협약에 1968년 10월 2일 가입하였다가 GATT관세평가협정 가입 후 1982년 4월 18일 탈퇴하였다.

#### ▶ GATT 관세평가협정

그후 미국, 캐나다 등 브뤼셀평가협약의 수용을 거부해온 나라들은 이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GATT관세평가협정」이 제정되었다. 이 협정은 198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그 정식 명칭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GATT관세평가협정이 브뤼셀평가협약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가격의 개념이다. 즉, 브뤼셀평가협약에서의 과세가격은 정상가격(Normal price)이라는 관념적 가격(notional concept)인데 반해 GATT관세평가협정에서 채택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실제적 개념(positive system)의 가격이다. 또한 그 결과 GATT관세평가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세평가제도는 거래가격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체방법(Alternative Methods)이라는 복수의 평가방법을 필요로 하는 등 그 체계가 복잡해 졌고, 브뤼셀평가협약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국 제운송비용에 관하여 CIF주의와 FOB주의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를 체약 국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6일

이 협정에 가입하였으나 개도국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5년간의 시행 유보를 거쳐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 브뤼셀 평가협약과 GATT관세평가협정의 비교

구분	브뤼셀 평가협약	GATT 관세평가협정
정식명칭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Brussels Definition of Valu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정년도	1953	1979
과세가격의 기초	정상가격(Normal price)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가격의 개념	관념적(Notional) 개념	실제적(Positive) 개념
평가방법	1가지	6가지
국제운송비용	CIF 주의 (과세가격에 포함)	CIF 또는 FOB 주의 (체약국의 선택)

#### ▶ WTO 관세평가협정

GATT관세평가협정이 관세평가의 국제표준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를 남긴 것은 개도국들이 이 협정을 외면한데서 기인한다. 협정발효 당시 가입국은 23개국에 불과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GATT관세평가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끝에 최종적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정식 명칭은 「1994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이하 이 책에서 '협정'이란 WTO관세평가협정을 말한다.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다. 그 명칭에서 도 보듯이 '1994년'을 제외하고는 GATT관세평가협정과 동일하고, 실체 규정인 평가규칙 또한 GATT관세평가협정과 동일하다. 협정 본문의 평 가규칙을 다루고 있는 제1부(제1조~제17조)와 부속서 I 주해는 동일하 고, 행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부 이하(제18조~제24조)와 부속서 II, Ⅲ가 조금 다를 뿌이다

그러나 GATT관세평가협정이 독립된 개별협정인데 비해 WTO관세평 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WTO회원국은 모두 이 협정의 이행의무를 진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 현재 WTO회원국이 164여 개국 인 점을 볼 때 WTO관세평가협정이야 말로 사실상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이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세평가표준인 것이다.

#### ▶ GATT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협정의 비교

구분	GATT관세평가협정	WTO관세평가협정	
정식명칭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협정의 지위	독립된 개별협정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	
제정년도	1979	1994	
관세평가규칙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동일함		
회원국수	1994년 현재 약 35개국	2021년 6월 현재 164개국	



# 관세평가의 법원과 기본원칙

# 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 1) 국내법령

관세평가의 법원을 대별하면 국내법령과 WTO관세평가협정으로 구성된다. 국내법령은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등이 해당된다.

<sup>66</sup>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sup>99</sup>

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평가의 근거이자 출발점이다 관세법령에서는 과세가격 신고와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과세가격 신고 : 관세법 제27조~제29조

> 관세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제3조의2

•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0조~제37조의4

> 관세법시행령 제17조~제31조의5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7조의10

행정규칙인 관세청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은 법률에 대한 우선권은 없고, 법률에 대한 보충적인 효력만을 갖는다

이 책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란 각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칭한다.

#### 2) 관세평가협정

국내법규는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조약인 'WTO관세평가협정'에 기 초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협정의 모든 내용을 국내법령이 수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시안을 처리할 때에 협정에 의지하여 관련 국내법령의 규정을 해석하거 나 협정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협정은 일반서설, 총 4부 24개조 본문규정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서설(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 본문 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제17조

2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 제18, 19조

3부 특별 및 차등대우 : 제20조 4부 최종조항 : 제21조~제24조

• 부속서 I. 주해(Interpretative Note)

11. 관세평가기술위원회

Ⅲ. 개발도상국 유보조항 등

부속서 I 주해는 협정의 해석이나 집행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정본문의 운용원칙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협정 본문과 연계하여 함께 검토되고 협정의 일부로 준수되어야 한다.

★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 국내법으로 편입된 것만으로 곧바로 재판규범 내지 개인에게 소권을 인정하는 근거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협정의 내용이 우리 관세법령에 반영되어 있어 관세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며,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WTO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 관세법령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협정의 집행을 위한 WTO관세평가위원회<sup>★</sup>의 결정(Decision)과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Instrument)이 있다.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채택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그 효력 에 있어 협정 자체와 다르지 않다. 또한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협정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등 5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적인 효력에 있어 이러한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분쟁 과정에서 패소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

권고의견 Advisory Opinions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협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 제공
পান্য Commentaries	협정의 특정규정에 대한 해석의 지침
해설	협정조문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문에 대한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Explanatory Notes	견해
사례연구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협정 규정의 적용
Case Studies	사례를 보여줌
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연구토록 임무가 부여된 사안에 대한
Studies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문서화한 것

<sup>★</sup>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sup>★★</sup> WCO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1) '상관행의 존중'과 '거래가격'
-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하며… <sup>● (GATT 제7조)</sup>
- 최대한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ransaction value)
   (협정 일반서설)

GATT 제7조는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은 최대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다

■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가산요소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

(협정 제8조 제4항)

당사자 간의 상관행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 즉 송품장가격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가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 4가지 거래가격 배 제사유에 여러 엄격한 조건을 붙여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 i)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 : 가격이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면
- ji) 조건 또는 사정: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 iii) 전매·처분·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 iv) 특수관계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 미쳤다면

#### 2) 대체 평가방법(Alternative Method)과 적용순서

현재 WTO관세평가협정은 실제적 개념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무상 수입물품처럼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이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정은 최우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거래가격방법 이외 에 추가로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 국내판매가 격방법 등 5가지의 대체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 다.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기초인 거래가격방법을 포함하여 6가지 방법들을 실무상 제1방법, 제2방법, 제3방법 등으로 부르며, 제2방법부 터 제6방법까지를 이 책에서는 대체방법(Alternative Method)으로 통칭 하다.

#### ■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Rightarrow$  법 제30조, 협정 제1조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법 제31조, 협정 제2조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법 제32조. 협정 제3조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법 제33조, 협정 제5조

제5방법: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 법 제34조, 협정 제6조

제6방법: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 법 제35조. 협정 제7조

6가지 평가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Sequential Application)되어야 하다

제1방법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으로써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거래가격이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배제된 경우에만 대체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자가 제4방법 과 제5방법의 적용순위를 바꿀 것을 요청할 경우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제5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4방법과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관세평가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의 신 뢰성은 관세평가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협정은 그 신뢰성의 판단기 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제시하면서, "세관당국은 국내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어떤 기업의 자산과 부채 등을 기 록하는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시기, 어떤 국가 내에서 의견일치가 인정되고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정보의 활용 예

- 공제가격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 수입국의 GAAP에 따른 자료
- 산정가격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 생산국의 GAAP에 따른 자료
- 가산요소인 생산지원(금액)의 배분 및 결정 : GAAP에 따른 자료

#### 4) 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통화인 경우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한다.

#### 과세가격 = 거래가격(외국통화) × 환율

화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될 환율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상거래에 사용된 통화의 현재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입국의 통화로 반영하여야 한다.

(협정 제9조 제1항)

과세환율은 수출입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입국 화폐의 현행가치를 반영해 공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8조에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정하는 주간단위 환율이며,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점으로 하고 있다.